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2. 1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11. 1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11. 20.

다. 상정일자: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11. 2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 김광현】

가. 제안이유

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특별휴가 개정(안 제24조)
 -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 구체화(제11항)
 -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(제13항)

- 생일휴가 신설(제16항)
-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변경(안 별표 3)
-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일수 변경(안 별표 4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입법예고 : 2023. 10. 26. ~ 11. 5. (제출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가.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조례안 개정 내용

- 안 제24조제13항 및 제16항에 특별휴가 신설·확대함.
 - 생일휴가 신설,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함.

복무 조례	
현 행	개 정
제24조(특별휴가) ⑬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 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: 5일	제24조(특별휴가) ⑬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: 5일

복무 조례

현 행	개 정
2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 3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20일 4.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	2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<u>15일</u> 3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<u>25일</u> 4. 재직기간 30년 이상: <u>25일</u>
<신 설>	⑯ 공무원은 <u>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</u> 를 받을 수 있다.

○ 안 별표 3 및 4에 상위법령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함.

-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및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일수를 변경함.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	복무 조례																			
	현 행	개 정																		
[별표 1] 경조사 휴가일수표 (제7조의7제2항 관련)	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(제24조제1항 관련)	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(제24조제1항 관련)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80%;"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출산</td> <td>배우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상	일수	출산	배우자	1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80%;"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출산</td> <td>배우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상	일수	출산	배우자	10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80%;"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출산</td> <td>배우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<u>15</u>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상	일수	출산	배우자	1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<u>15</u>)
구분	대상	일수																		
출산	배우자	1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																		
구분	대상	일수																		
출산	배우자	10																		
구분	대상	일수																		
출산	배우자	1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<u>15</u>)																		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	복무 조례	
	현행	개정
<p>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7조 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.</p>	<p>[별표 4] <u>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</u> (제18조의2 관련)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나.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: 2일 가산</p>	<p>[별표 4] <u>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</u> (제18조의2 관련)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나.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: 3일 가산</p>

○ 안 제24조제11항에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반영함.
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 중 ‘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 구체화’를 위한 권고사항 반영

복무 조례	
현행	개정
<p>제24조(특별휴가) ⑪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.</p>	<p>제24조(특별휴가) ⑪ ----- ----- ----- ----- 줄 수 있으며, <u>그 성과와 공로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생일휴가 신설,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는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적 현상 등에 따라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자기계발과 복리후생 확대의 처우개선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증대로 인한 국민들의 행정민원서비스 질 개선 효과로 발전할 것이며 출산휴가 상향은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·확대,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반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 휴가의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의 최소화에 대한 기술적 보완책 마련을 통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